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8일  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17일, 김희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희걸)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### 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### 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	비고
제7조 제2항 중	부여할 수	줄 수	
제8조 중	취할 수	밟을 수	
제8조 제4호 중	현저한	뚜렷한	
제11조 제3호 중	취·창업	취업·창업	
제15조 중	취할 수	밟을 수	
제15조 제3호 중	현저한	크게	
제19조제4항 중	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	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
제21조 제2항 중	적합하도록	맞도록	
제22조 제1항 중	경감할	줄일	
제22조 제1항 제1호 중	경감	줄임	
제22조 제1항 제2호 중	경감	줄임	
제22조 제1항 제2호 중	경감한다	줄인다	
제22조 제2항 중	경감할	줄일	
제22조 제2항 제1호 중	경감한다	줄인다	
제22조 제2항 제2호 중	경감한다	줄인다	
제22조 제2항 제3호 중	경감한다	줄인다	
제29조제2항 중	교부결정	발급결정	
제29조제2항 중	취할 수	밟을 수	

#### 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우선, 안 제19조제4항의 내용 중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는 것은,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,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음으로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,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.

- 다만, 현행 조례 내용 중 “취할 수” 를 “뺄 수” 로 개정(안 제8조와 안 제15조, 안 제29조제2항 관련)하려는 것과, “현저한” 을 “크게” 로 개정(안 제15조 제3호)하려는 것은,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, 현행의 용어를 유지하더라도 그 해석상 어려움이 크지 아니하고, 오히려 현행 조례의 입법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.
- 이는 정부의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’ 의 정비 기본원칙에서도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, 기본원칙에 따르면, “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에 있어 입법 의도와 다르게 이해 될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” 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. 또한 상기 제시한 용어들은 법제처 기준 정비 용어 및 국립국어원 권장 순화어를 고려해볼 때 현행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조사됨.
- 덧붙여,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“경감” 또는 “경감한다” 등 관련 용어를 “줄임” 또는 “줄인다” 등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, 개정 본문안에는 현행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“경감한다” 의 경우 여기서 제외되어 있음. 그러나 첨부된 신·구조문대비표에는 이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이는 개정안의 본문 내용 작성에서의 단순 실수로 파악되어짐. 따라서 만약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, 상기의 개정안 본문 내용에서 탈락된 용어는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교정·보완 될 필요가 있음. 마찬가지로 안 제15조의 개정본문 중 “크게” 는 “뚜렷한” 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또한 의안 정리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 중 “부여할 수”를 “줄 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취할 수”를 “밟을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현저한”을 “뚜렷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호중 “취·창업”을 “취업·창업”으로 한다.

제15조중 “취할 수”를 “밟을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중 “현저한”을 “뚜렷한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중 “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중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중 “경감할”을 “줄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중 “경감”을 “줄임”으로 하고,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“경감”을 “줄임”으로 하고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중 “경감할”을 “줄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중 “경감한다”를 “줄인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중 “교부결정”을 “발급결정”으로 하고 “취할 수”를 “뺄 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용허가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기능,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, 여성플라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사용허가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줄 수 -----.</p>
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4. 여성플라자의 안전에 <u>현저한</u>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</p>	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باط</u>을 수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뚜렷한</u> -----</p>
<p>제11조(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)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2. (생 략)</p> <p>3.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<u>취·창업</u> 촉진 사업 추진</p>	<p>제11조(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취업·창업</u> -----</p>
<p>제15조(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</p>	<p>제15조(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) ----- ----- -----</p>

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여성발전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

제19조(운영비 등의 지원)

①~③ (생략)

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,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사용료의 감면 등)

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. 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
-----  
----- 낮을 수 ----.

1.~2. (생략)

3. ----- 뚜렷한  
-----

제19조(운영비 등의 지원)

①~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맞도  
-----  
-----.

제22조(사용료의 감면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줄일 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줄임 -----  
-----  
----- 줄인다.



2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따른 여성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. 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
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

1.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: 해당 사용료 각각 면제. 다만, 제14조 제2항 제1호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2. 두 자녀 이상의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: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
3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, 교육운영시간,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
제29조(지도·감독)

① (생략)

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위법·부당사항·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줄임 -----  
-----  
----- 줄인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줄임 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줄인다.

2. -----  
----- 줄인다.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줄인다.

제29조(지도·감독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

고, 시정명령, 보조금 교부결정 취  
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---- 지급결정 --  
----- باط을 수 --.